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 '05년 5월 인상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이에따른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계획을 연기해 왔으나
- 하수처리 수준향상 및 재난예방을 위한 하수도기반시설 확충 투자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연차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 I 추진배경

- 2005년 이후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지난 6년간 요금동결
  - '11. 1. 정부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 상반기 인상보류
  - '11. 6. 하반기 인상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라 재조정(하반기 →'12. 1)
- 하수도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37%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악화 심화
- 하수처리 수준향상 및 재해예방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재원마련 시급

※ 과거 연도별 인상 현황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인 상 률 (%)	25.2%	22%	35%
인상 평균단가 (원/톤)	128원 → 161원 (증 33원)	164원 → 201원 (증 37원)	216원 → 291원 (증 75원)
<가정용 1단계 요금>	70원 → 90원	90원 → 120원	120원 → 160원

## II

## 재정현황 및 현실화 필요성

### □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주재원으로 운영

- 2011 세입규모 : 총 4,940억원(※ 사용료 인상 추계분 747억원 포함)
  - 하수도사용료 3,942억원 (80%), 부담금 380억원 (8%), 기타 618억원(12%)

### □ 낮은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율 극히 저조

- '10년 기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37%로 174%의 인상요인 발생

총 하수량	총괄원가	조정금액	비 고
1,136백만 $m^3$ ( $m^3$ 당 요금)	8,808억원 (775원)	3,220억원 (283원)	결손액 5,588억원

※ 상수도요금 : 원가 577원/ $m^3$ , 요금 514원/ $m^3$ (현실화율 89%)

※ 총괄원가 = 영업비용(집행경비 + 감가상각비) + 자본비용

- 국내·외 주요도시 하수도요금 비교시 현저히 낮은 수준

- 타 광역시 평균 현실화율 71%에 크게 미달
  - 부산 66%, 대구 66%, 인천 58%, 광주 75%, 대전 76%, 울산 88%
- 가정용 기본구간은 외국 주요도시의 12% 이내 수준에 불과
  - 서울 160원, 동경 1,300원, 파리 1,590원, 런던 1,620원, 뉴욕 1,800원

### □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

-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투자재원은 물론 유지관리비 총당도 어려움

- 총괄원가중 영업비용 : 약 6,000억원/년(자치구 일반예산 제외)
- 하수도사용료 수입 : 3,200억원/년

- 방재 및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른 신규투자 수요 지속증가

- 2020년까지 총 소요사업비 : 7조 7,830억원
  - 하수관거분야 : 3조 4,660억원
  - 물재생센터 투자비 : 2조 1,900억원
  - 시설운영비 : 2조 1,270억원

### III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안)

### □ 추진방향

#### ○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및 시민 가계부담을 고려 단계별로 현실화

- 1단계 : '14년까지 68% 현실화 (283원→528원/m<sup>3</sup>)

- 2단계 : '20년까지 100% 현실화 (775원/m<sup>3</sup>)

#### ※ 현실화율 68%는

- 최소한의 시설유지관리비 수준으로, 타광역시 평균 현실화율(71%)보다 낮으며,
- 하수도보다 총괄원가가 낮은 상수도 평균요금(514원, 현실화율 89%) 수준임

#### ○ 연차별 인상요금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 재원확보

##### ◇ 정부의 하반기 공공요금 가이드라인 ('11.6.30 발표)

- 경영효율화를 통한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고, 요금동결 기조 유지
- 다만,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연도별로 나누어 인상하는 방안 검토
- 인상폭은 요금 동결기간 동안의 원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

### □ 1단계 현실화 계획

#### ○ '14년까지 현실화율 68% 목표

- 3년간 나누어 인상하되 '12년은 요금동결기간동안 원가(집행경비) 상승율(35%) 반영

구 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상율(%)		35	20	15
평균요금(원/톤)	283	382	458	528
인 상 액(원)		99	76	70
현실화율(%)	37	49	59	68
예상수익(억원)	3,220	4,340	5,200	6,000

※ 가정용 기본요금 : 현재 160원/m<sup>3</sup> → '12년 220원/m<sup>3</sup>

※ 평균사용가정(17m<sup>3</sup>기준) 추가부담 : 1,020원(2,720원 → '12년 3,740원)

※ '12년 35% 인상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58%로 미미함

**업종별 요율조정 방향**

- 가정용 및 목욕탕용은 서민가계 부담 고려 평균인상을 적용
- 향후 상수도업종 통합조정에 대비하여 업무용은 연도별 평균인상율보다 5 ~ 10% 상향 조정, 누진율이 높은 영업용은 하향 조정

**< 업종별 평균요금 조정안 >**

(단위 : 원/㎥)

업종별	현재	2012년		2013년		2014년		누적 인상율
		인상율	평균요금	인상율	평균요금	인상율	평균요금	
전체평균	283	35%	382	20%	458	15%	528	86%
가정용	160	37%	221	18%	261	15%	301	87%
목욕탕용	226	36%	307	20%	370	14%	423	87%
업무용	399	45%	578	30%	752	19%	897	125%
영업용	614	30%	800	19%	949	14%	1,081	76%
유출지하수	170	29%	220	18%	260	15%	300	76%

※ 업종별 누진단계별 세부 조정내역 별첨

**기대 효과**

- 세입 증가 : 현재 3,220억원 → '14년 6,000억원
  - 관거정비 사업비 연간 3,000억원 규모 확보(현재 약 1,500억원)
- 현실화율 개선 : 37% → 68%(528원/775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강화

**IV 향후 일정계획**

- '11. 8. 25.           입법예고(시보게재, 8.25~9.14)
- '11. 9. 21.           조례·규칙 심의
- '11. 10. 6.           시의회 임시회 상정
- '12. 1.               인상요율 적용 부과징수

- 붙임 : 1.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1부  
 2. 참고자료(별첨)

[붙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m^3$ )	연도별 $m^3$ 당 단가(원)		
		'12년	'13년	'14년부터
가정용	0~30이하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510	610	700
	50초과	780	930	1,070
대중 목욕탕용	0~500이하	240	290	330
	500초과~2,000이하	300	360	410
	2,000초과	340	410	470
업무용	0~50이하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560	730	880
	300초과	640	840	1,000
영업용	0~30이하	250	320	380
	31~50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1,080	1,270	1,440
	1,000초과	1,130	1,330	1,520
※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은 사용여부 및 업종 구분 없이 $1m^3$ 당		220	260	300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료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 규정은 당해 연도 1월납기분부터 적용한다.

## 업종별 요금조정 내역

### ① 가정용

- 가정용은 전체 하수량의 64%를 점하고 있으나 사용료 점유율은 36%로 낮은편임
- 가정용이 재정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나,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평균인상을 적용

사용구간(m <sup>3</sup> )	m <sup>3</sup> 당 요금				누적 인상율(%)
	현행	조 정 안			
		2012	2013	2014	
0 ~ 30	160	220	260	300	88
31 ~ 50	380	510	610	700	84
50 초과	580	780	930	1,070	84
평 균	160	221	261	301	87

※ 가구당 월평균 사용료(17m<sup>3</sup>기준)

현재 2,720원 → '12년 3,740원(증 1,020원) → '13년 4,420원(증 680원)  
→ '14년 5,100원(증 680원)

### ② 대중목욕탕용

- 타 업종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의 요금 체계이나 서민이용 시설임을 감안 평균인상을 반영

사용구간(m <sup>3</sup> )	m <sup>3</sup> 당 요금				누적 인상율(%)
	현행	조 정 안			
		2012	2013	2014	
0 - 500	180	240	290	330	83
501 - 2000	220	300	360	410	86
2000 초과	250	340	410	470	88
평 균	226	307	370	423	88

※ 월평균 2,000m<sup>3</sup> 사용료 : 현재 420,000원 → '12년 570,000원(증 150,000원)

### 3] 업무용

- 업무용(관공서, 학교, 언론사, 병원 등)은 비교적 다량 사용 업종이나 낮은 요금 구조로 톤당 평균요금은 영업용의 65% 수준임
- 영업용과의 형평성 제고 및 향후 업종통합 대비 누진율 상향 조정

사용구간(m³)	m³당 요금				누적 인상율(%)
	현행	조정안			
		2012	2013	2014	
0 - 50	260	370	460	550	112
51- 300	390	560	730	880	126
300 초과	440	640	840	1,000	127
평균	399	578	752	897	125

※ 월평균 200m³ 사용료 : 현재 71,500원 → '12년 102,500원(증31,000원)

### 4] 영업용

- 영업용 사용량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나, 높은 누진율로 인해 사용료 점유율은 48%로 불균형 초래, 업무용과의 통합 대비 다량 사용구간 누진율 완화 조정, 다만, 타업종 대비 낮게 책정된 기본사용구간(0-30m³)은 상향 조정

사용구간(m³)	m³당 요금				누적 인상율(%)
	현행	인상			
		2012	2013	2014	
0 ~ 30	170	250	320	380	124
31 ~ 50	410	550	660	750	83
51 ~ 100	650	870	1,010	1,140	75
101 ~ 200	790	1,030	1,220	1,370	73
201 ~ 1000	850	1,080	1,270	1,440	69
1000 초과	880	1,130	1,330	1,520	73
평균	614	800	949	1,081	76

※ 월평균 100m³ 사용료 : 현재 45,800원 → '12년 62,000원(증 16,200원)

### 5] 유출지하수

- 자연유출 및 지하철 등 공익시설에서 다량배출되는 점 등을 감안 가정용 최소 구간 수준으로 인상

사용구간(m³)	m³당 요금				누적 인상율(%)
	현행	인상			
		2012	2013	2014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없이 1m³당	170	220	260	300	76

## 202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투자소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20년
<b>총 계</b>	7,783,174	673,383	758,828	952,592	816,753	4,581,617
물재생센터 분야 투자사업비	2,190,063	145,707	222,737	252,618	232,043	1,336,959
고도처리 및 1단계 현대화	410,601	107,139	132,695	90,000	80,767	0
2단계 현대화	844,565	0	0	15,945	67,442	761,178
초기우수처리시설	569,057	4,658	62,738	73,541	67,025	361,095
물재생센터 환경개선	35,400	6,500	8,300	20,600	0	0
분뇨처리시설	22,600	7,100	5,500	10,000	0	0
슬러지처리시설	77,934	11,256	8,500	20,398	1,728	36,052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정비	225,856	5,004	5,004	22,134	15,081	178,634
하수처리수 재이용	4,050	4,050	0	0	0	0
하수관거 분야 투자사업비	3,465,879	303,477	300,613	454,466	340,122	2,067,201
단위개량사업	64,450	21,950	21,250	21,250	0	0
수해방지사업	200,635	72,648	63,986	64,001	0	0
종합정비사업	582,085	159,720	155,935	266,430	0	0
하수관거정비(2015년 이후)	1,687,398	0	0	0	234,259	1,453,139
CSOs 저류시설	560,411	9,159	19,442	63,885	63,863	404,062
하수암거 보수보강	370,900	40,000	40,000	38,900	42,000	210,000
경상운영비	2,127,232	224,200	235,478	245,509	244,588	1,177,457
물재생센터 운영비	1,703,739	171,587	184,390	189,834	192,988	964,940
본청 운영비	423,493	52,613	51,088	55,675	51,600	212,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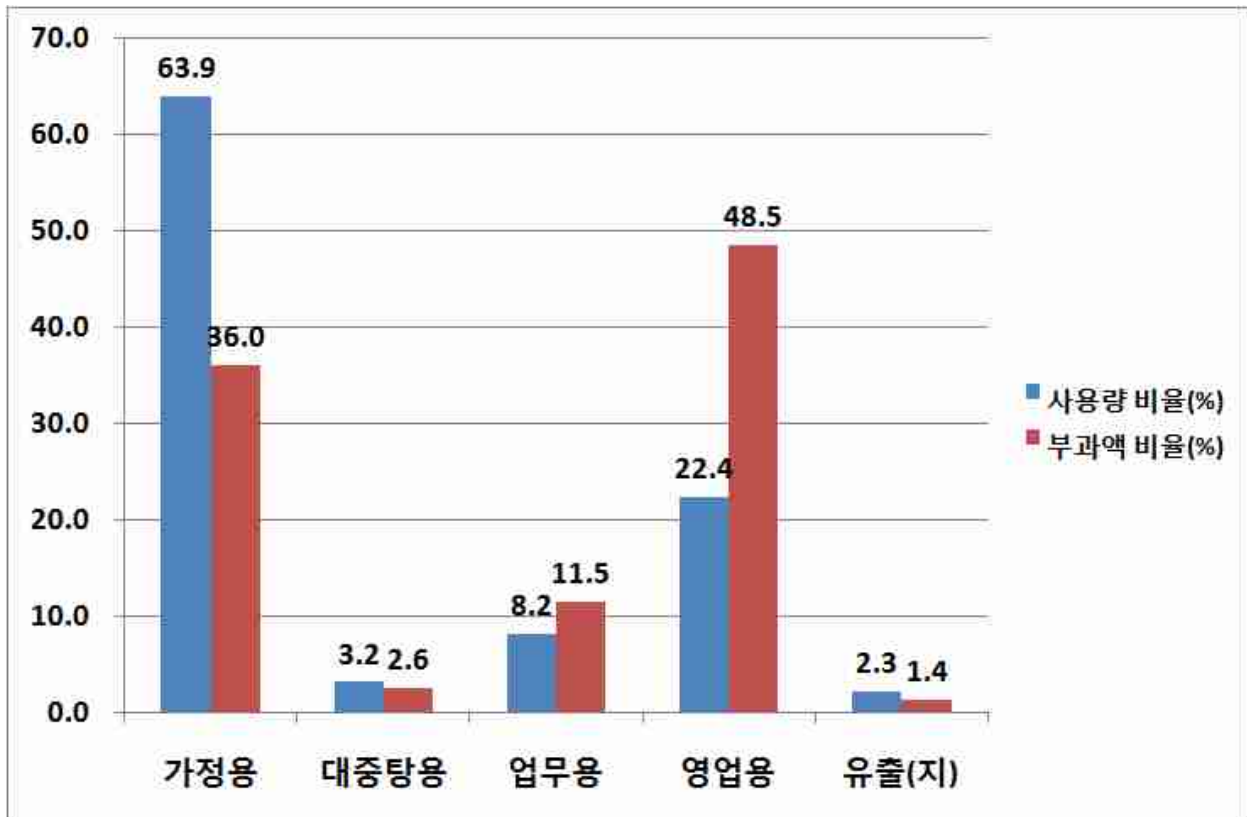


< 참고자료 3 >

## '10년 하수도사용료 부과 현황

구 분	계	가정용	대중탕용	업무용	영업용	유출(지)
사용량(천톤) (비율%)	1,136,123 (100%)	725,975 (63.9%)	36,673 (3.2%)	92,609 (8.2%)	254,250 (22.4%)	26,617 (2.3%)
부과금액(백만원) (비율%)	321,995 (100%)	116,041 (36.0%)	8,305 (2.6%)	36,913 (11.5%)	156,211 (48.5%)	4,525 (1.4%)
㎥당 평균단가(원)	283	160	226	399	614	170

< '10년 사용량 및 부과액 비율 >



## 타 광역시와 비교 현황

### 5 현실화율 비교

구 분	서울	광역시 평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처리원가(원/㎡)	775	477	592	484	523	398	455	411
평균단가(원/㎡)	283	335	387	321	302	298	344	360
현실화율 (%)	37	71	66	66	58	75	76	88





## 인상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인상율(안)	하수도 사용료(가정용 30m³이하)		품목지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35%	160원	220원	109.8	151.0	0.058%

5 산출방법(통계청 자료, '11.7월 기준)

$$\frac{(\text{인상후 품목지수} - \text{인상전 품목지수})}{\text{서울지역 '10. 12월 총지수}} \times \frac{\text{품목가중치}}{\text{전체가중치}} \times 100$$

- ① 인상전 하수도사용료 품목지수 : 109.8
- ② 인상후 하수도사용료 품목지수 : (인상후 사용료 ÷ 인상전 사용료) × 인상전 지수
- ③ 하수도사용료 서울지역 가중치 : 1.70
- ④ 서울지역 '11.7월 총물가지수 : 120.4
- ⑤ 전체가중치 : 1,000

5 산출내역

$$\boxed{35\% \text{ 인상시}} \frac{(151.0 - 109.8)}{120.4} \times \frac{1.70}{1,000} \times 100 = 0.058\%$$

<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심의대상
  - 교통요금(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 도시가스요금
  -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 상·하수도요금은 조례사항으로 심의대상 제외, 다만, 필요시 선택적 심의 ('03년 3월 “물가대책위원회 정비 및 내실화 계획” 방침)

## 상 · 하수도 요금 비교표

구경별 기본요금		구 분		상수도요금 (원/m <sup>3</sup> )	하수도요금(원/m <sup>3</sup> )
구 경 (mm)	요 금 (원)	업 종	사용구분(m <sup>3</sup> )		
13	1,080	가 정 용	0~30이하	320	160
20	3,000		30초과~40이하	510	380
25	5,200		40초과~50이하	570	
32	9,400		50초과	790	580
40	16,000	대 중 목욕탕용	0~500이하	270	180
50	25,000		500초과~2,000이하	320	220
65	38,900		2,000초과	430	250
75	52,300	업 무 용	0~50이하	470	260
100	89,000		50초과~300이하	600	390
125	143,000		300초과	680	440
150	195,000	영 업 용	0~30m <sup>3</sup> 이하	800	170
200	277,000		30m <sup>3</sup> 초과~50m <sup>3</sup> 이하		410
250	375,000		50m <sup>3</sup> 초과~100m <sup>3</sup> 이하		650
300	465,000		100초과~200m <sup>3</sup> 이하	900	790
350	565,000		200초과~1000m <sup>3</sup> 이하	1,100	850
400이상	615,000		1000m <sup>3</sup> 초과	1,260	880
		월 10m <sup>3</sup> 이하 가정용은 1m <sup>3</sup> 당 190원			유출지하수1m <sup>3</sup> 당 170원